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65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김동아·김문수·이수진

이인영 · 김성환 · 김영호

오세희 • 전현희 • 박균택

한정애 · 이병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일정한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규정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대상물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최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를 통해 도시 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들 사업자는 천연가 스 가격변동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 해 사용하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바,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수급상 필요성"을 파악하여야 함.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재고현황, 도입계획 등 필요 한 자료의 획득 권한이 부재하여 조정명령 발령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수급 위기상황 에서 적시에 조정명령을 발령하지 못했음.

이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 구 등 조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에너지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물량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8제1항제2호).
- 나.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

스를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9제3항).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의 이행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3제2항).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 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4).
- 바. 조정명령 발령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제16호).
- 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자료제출요구 거부 내지 현장조사 방해행위 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2호의2).

법률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
-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0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의9제3항 중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수입하거나,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무소나사업장 또는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 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 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이하 "도시가스사업자 등"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자료제출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도시가스사업 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0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조의9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형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 기원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② (생략)

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1</u> 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 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 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 개 정 안

- 제10조의8(과징금)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 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 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 입량에 해당하는 금액
 -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0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도시가스물량에 해당하는금액
 - ② (현행과 같음)
 - ③ ------<u>제1항</u> 제1호-----

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 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 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략)

-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 전 연가스 대상물량) ①·② (생략)
 -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 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 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 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 는 아니 된다.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
|-------------------|
| 세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 |
| 연가스 대상물량) ①・② (현행 |
| 과 같음) |
| 3 |
| |
| |
| |
| <u>수</u> 입하거나, |
|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 |
| 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
|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 |
| 와 사전 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 |
| 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
| <u>서는 아니 된다</u> .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
| 항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 |
| 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 |

<신 설>

<신 설>

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자가소비용직수 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 또는 해당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부 터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 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의3(지도·감독) (생 략)

<신 설>

<신 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5. (생략) <신 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제40조의3(지도·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 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 과 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 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 입자 등(이하 "도시가스사업자 등"이라 한다)을 지도·감독한 다.

제40조의4(자료제출의무)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 서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필요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를 받 은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40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 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 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 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 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15. (생략)

| <u>.</u> |
|-----------------------|
| 1. ~ 2. (현행과 같음) |
| 2의2. 제10조의9제4항에 따른 |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 |
| <u>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u> |
| 3. ~ 15. (현행과 같음) |